

##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

1년에 1회 이상 **의무적으로** 하셔야 합니다.

### ■ 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란?

-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, 분해 등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

### ■ 정화조 청소 시기는?

-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사용량이 증가할 때에는 청소시기도 빨라집니다.
-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기능이 저하되어 분뇨 등이 직접 하수도로 유입되어 한강을 오염시킵니다.

### 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정화조 오니의 양(오수포함)에 따라 부과됩니다.

- 기본요금: 750 ℓ (0.75m<sup>3</sup>)까지 20,310원
- 초과요금: 100 ℓ (0.1m<sup>3</sup>) 초과시 마다 1,450원씩 가산
- 야간할증: 주간 청소요금의 7%가 가산됨

### ■ 이런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-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, 정화조) 설치 및 준공·멸실, 정화조 용량 변경시

### ■ 정화조 청소 미이행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?

- 하수도법 제 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